

第22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8.12.15. ~ 12.1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2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57
II.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59
III.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67
IV. 부 록	
1. 의사일정	175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7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9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3
5. 조례심사보고서	287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14시 00분

開會式順(第22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곽종수)

(14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곽종수

(14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14시 02분

議事日程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교육기관방문의건
6.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병우 위원 외 4인)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교육기관방문의건(의장 재의)
7.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의장 재의)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재의)

(14시 02분 개의) 포함니다.

● 의장 걱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황익상 공보감

사담당관께서는 감사원 전국 감사관 회의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걱정수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학신

의사과장 이학신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5일 김병우 교육위원 외 4인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8년 12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심사와 교육기관 및 신설학교 신축 현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걱정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22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4시 03분)

● 의장 걱정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회의 산회 후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교육기관 방문 및 신설학교 현장방문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5분)

● 의장 광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심의 결정되어 2008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통보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월정

수당을 월 185만원에서 월 218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8조 여비 지급 기준에서 별표1 비고란에 제3호를 신설하여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 및 신규 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광정수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우 교육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조례심사소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8분)

● 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걱정수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 지

번 변경으로 인한 주소 변경,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폐지,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및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에 단설유치원인 산남유치원과 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9년 3월 1일자로 개원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청주 대농지구에 직지초등학교, 강서1지구에 서현중학교, 용정지구에 용성중학교,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내 오송중학교를 2009년 3월 1일 개교하며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라 진천농공고등학교를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번 확정 및 지번 변경으로 인한 주소 변경으로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7개원, 서현초등학교 외 7개교, 영동중학교 외 1개교, 서원고등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며,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셋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인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병설유치원, 청성초등학교

농월분교장, 청성초등학교 농월분교장 병설유치원,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 병설유치원, 영춘초등학교 의풍분교장 및 충주중앙중학교 가금분교장을 2009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확정하던 것을 심의 사항에서 삭제하고, 주거용 건물에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주거용 건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건물 및 토지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시 기존의 감액하는 비율을 경작용 100분의 50, 생산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일괄 변경하고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매각 기준 연도와 형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재산의 범위를 신설하여 전세금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재산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인용 법률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걱정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교육기관방문의견

(14시 14분)

● 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기관방문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가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기관은 임시회 기간중 12월 16일 1일간으로 하며, 방문기관은 선진 충북교육 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방문 목적은 직속기관의 운영 및 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육기관방문의견은 제가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신설학교현장방문의견

(14시 15분)

● 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가 제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개교 예정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수용계획과 시설공사의 문제성은 없는지 등을 사전 확인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를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 교육위원이 2008년 12월 17일 1일간 청주지역에 건설 중인 직지초, 용성중, 서현중과 청원에 건립 중인 오송중의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견을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견

(14시 17분)

● 의장 걱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

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영용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총무과장 서재문, 기획관리과장 황용수,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재무과장 박노화,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12월 19일 (금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병우 위원 외 4인)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걱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박노화 재무과 장께서는 교과부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회의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걱정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2분)

● 의장 광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성영용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던 바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폐지,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 지번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신설은 유아교육 기회확대와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에 단설유치원인 산남유치원과 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9년 3월 1일자로 개원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청주 대농지구에 직지초등학교, 강서1지구에 서현중학교, 용정지구에 용성중학교,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내에 오송중학교를 2009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의 경우 설립 요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 설립 계획에 의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명 변경으로 진천농공고등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원예과 관련 특성화 영역을 학교명칭에 반영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명을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학교 주소지 변경으로 이는 택지개발지구내 지번 확정 및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을 정정하고자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7개원, 서현초등학교 외 10개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폐지에 있어서는 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샛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인근에 단설유치원인 산남유치원이 2009년 3월 개원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병설유치원 외 2개원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본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됨으로 해서

폐지되는 것입니다.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외 4개교의 경우 농촌의 이농현상과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복식학급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학생이 있는 또래 집단 속에서 폭넓은 인격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성 신장 및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본교로 통합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9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종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50% 이상 진척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된 후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사중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해서는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되는 복식부기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는 별도의 절차

가 불필요하게 되어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공사 중인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행정재산으로서의 확정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 제3항 제5호에서 현재 주거용 건물 중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에 비해 높은 요율을 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요율을 1천분의 50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감액 범위가 종전 5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경작용 100분의 50, 생산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까지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용도별 구분을 없애고 100분의 70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41조 제3호에서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

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한 바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가 2005년 6월 30일 개정되어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토지에 대한 소유시점이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변경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 부칙 제6조와 동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고 아울러 보상을 함에 있어서도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5조 제1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체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의 대부료 감액을 변동에 따른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제36조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걱정수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곽정수,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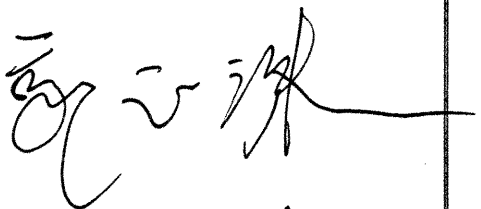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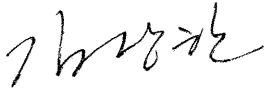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전재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황익상, 학교정책과장 정진구,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 이종찬, 총무과장 서재문, 기획관리과장 황용수,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8. 12. .

의 장	곽 정 수	
위 원	성 영 용	
위 원	이 상 일	
의사국장	김 장 한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8. 12. 15.~12. 19.(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월 15일(월) 14: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화 기 : 2008. 12. 15. ~ 12. 19. (5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교육기관 방문의 건 6. 신설학교 현장방문의 건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제 의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 의 제 의 제 의
본회의 종료 후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	
12월 16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 방문 ○ 충북교육과학연구원	본회의 휴 회
12월 17일(수)	<input type="checkbox"/> 신설학교 현장방문 ○ 직지초,용성중,오송중,서현중 신축현장	본회의 휴 회
12월 18일(목) 11:00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12월 19일(금) 14: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의 결 의 결 의 결

(별첨 2)

의안번호	제 223-1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223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병우 위원 외 4인
발의연월일	2008년 12월 8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3-1
----------	-------

발의연월일 : 2008. 12. 8.
발 의 자 :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 무 (5인)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교육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에 지급되는 여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850,000원에서 월 2,180,000원으로 함 (안 제3조제1항)
- 별표 1(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제3호 규정을 신설함

참고자료

- 가.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나.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 1,850,000원” 을 “월 2,180,000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
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
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1,85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 2,180,000원..... </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위원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의 장 부위원장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위 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위 원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비고 : 1. (생략) 2. (생략) 3. (신설)								비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연 1,800만원)
-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한 금액
범위
- 월정수당 : 월 218만원(연 2,616만원)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기준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구 분								
시·도	의 장 ·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 장 ·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신설 2008.10.8>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times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로그 값}) + \text{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특별시·광역시·도(0.249) / 50만 이상 시(0.092) / 50만 미만 시(0.031) / 도·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연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223 - 2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12월 일 (제 223 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12월 5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	---

제출연월일 : 2008. 12. 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2009학년도 유치원·초·중학교 신설,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 명칭 변경, 초·중 통합 운영과 지번 변경으로 인한 주소 변경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폐지와,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09학년도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및 중학교 3개교 신설

(1) 단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원년월일	설립사유
산남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75번지	2009.3.1.	공교육 기반조성

(2)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원년월일	설립사유
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2009.3.1.	공교육 기반조성

(3)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개교년월일	설립사유
직지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2009.3.1.	대농1지구 유입학생수용

(4) 중학교

명 칭	위 치	개교년월일	설립사유
서현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006번지	2009.3.1.	강서1지구 유입학생 수용
용성중학교	충청북도 상당구 용정동 388-1번지	2009.3.1.	용정지구 유입학생 수용
오송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 개발지구 65BL	2009.3.1.	오송생명과학단지 유입학생수용

나. 전문계 고등학교 교명 변경

변경전 명칭	변경후 명칭	위 치	변경년월일	변 경 사 유
진천농공고등학교	진천생명 과학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2009.3.1.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다. 학교 주소 변경

(1) 병설유치원

명 칭	구 분	위 치	변 경 사 유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지번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917번지	
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31번지에서 31-5번지로 분할
	변경후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5번지	
이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485번지에서 485-1번지로 분할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1번지	

명 칭	구 분	위 치	변 경 사 유
부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224번지와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4번지	
매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53-1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3-1번지	
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524-1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4-1번지	
초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지번 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1-1번지	
가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초·중 통합운영
	변경후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번지	

(2) 초등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 경 사 유
서현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지번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917번지	
충주금릉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31번지에서 31-5번지로 분할
	변경후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5번지	
이수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485번지에서 485-1번지로 분할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1번지	
부용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224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4번지	
매곡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53-1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3-1번지	
심천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524-1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4-1번지	

명 칭	구 분	위 치	변 경 사 유
초강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지번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1-1번지	
가곡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초·중 통합운영
	변경후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번지	

(3) 중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 경 사 유
영동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번지	78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8번지	
상촌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번지	467번지에서 467-3번지로 분할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3번지	

(4) 고등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 경 사 유
서원고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79번지	구획정리확정 으로 인한 지번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80번지	

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분교장병설유치원 3개교 폐지

(1)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73번지	2009.3.1.	단설유치원 신설
셋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095번지	2009.3.1.	단설유치원 신설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2009.3.1.	엄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청성초등학교 능월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2009.3.1.	청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2009.3.1.	칠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

(2) 초등학교분교장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2009.3.1.	엄정초등학교로 통합
청성초등학교 능월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2009.3.1.	청성초등학교로 통합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2009.3.1.	칠성초등학교로 통합
영춘초등학교 의풍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2009.3.1.	영춘초등학교로 통합

(3) 중학교분교장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충주중앙중학교 가금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번지	2009.3.1.	충주중앙중학교로 통합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08. 10. 10 ~ 10. 31)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 중 "별표 1 내지 별표 6"을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제3조 중 "관리운영 기타"를 "관리·운영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의 서원고등학교의 위치란중 "1579번지"를 "1580번지"로, 진천농공고등학교의 명칭란중 "진천농공고등학교"를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영동중학교의 위치란중 "69-1번지"를 "78번지"로, 상촌중학교의 위치란중 "467번지"를 "467-3번지"로하고,

성화중학교란 다음에 서현중학교란, 용성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서현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006번지
용성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88-1번지

옥산중학교란 다음에 오송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오송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 65BL
-------	-------------------------------

충주중앙중학교가금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서현초등학교의 위치란중 “강서1지구 70BL”를 “1917번지”로, 충주금릉초등학교의 위치란중 “31번지”를 “31-5번지”로, 이수초등학교의 위치란중 “485번지”를 485-1번지”로, 부용초등학교의 위치란중 “225번지”를 “224번지”로, 매곡초등학교의 위치란중 “54번지”를 “53-1번지”로, 심천초등학교의 위치란중 “528번지”를 “524-1번지”로, 초강초등학교의 위치란중 “459번지”를 451-1번지”로, 가곡초등학교의 위치란중 “467번지”를 “435번지”로하고,

성화초등학교란 다음에 직지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직지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	--------------------------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란, 청성초등학교능월분교장란, 칠성초등학교외사분교장란, 영춘초등학교의풍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6의 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강서1지구 70BL”를 “1917번지”로, 충주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31번지”를 “31-5번지”로, 이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485번지”를 “485-1번지”로, 부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225번지”를 “224번지”로, 매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54번지”를 “53-1번지”로, 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528번지”를 “524-1번지”로, 초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459번지”를 “451-1번지”로, 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467번지”를 “435번지”로 하고,

서원유치원란 다음에 산남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남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75번지
-------	------------------------

성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직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직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	--------------------------

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셋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병설유치원란, 청성초등학교능월분교장병설유치원란, 칠성초등학교외사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u>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u> 를 설치한다.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u>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u>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 내지 별표 6와.....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제3조(시행규칙) 관리운영 기타.....	제3조(시행규칙) 관리·운영과 그밖에.....	

[별표 1]

고등학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서원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9번지	1580번지		
진천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별표 3]

중학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성화중학교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서현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006번지		
<신 설>		<신	설>	용성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88-1번지		
옥산중학교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오송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	65BL		
충주중앙중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번지	<삭 제>		<삭 제>			
가금분교장									
영동중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번지	78번지		
상촌중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번지	467-3번지		

[별표 4]

초등학교

현		개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서현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지구 70BL 1917번지
충주금릉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31-5번지
성화초등학교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직지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엄정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삭 제>	<삭 제>
목계분교장			
청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삭 제>	<삭 제>
능월분교장			
이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485-1번지
부용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224번지
매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53-1번지
심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524-1번지
초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451-1번지
칠성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삭 제>	<삭 제>
외사분교장			
가곡초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435번지
영춘초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삭 제>	<삭 제>
의풍분교장			

[별표 6]

유치원

현		개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1지구 70BL 1917번지
서원유치원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산남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75번지
성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73번지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명	칭
새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095번지	<삭 제>	<삭 제>						
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31-5번지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삭 제>	<삭 제>						
청성초등학교 농월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삭 제>	<삭 제>						
이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485-1번지
부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224번지
매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53-1번지
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524-1번지
초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451-1번지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삭 제>	<삭 제>						
가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435번지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2008. 3. 21)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별첨 4)

의안번호	제223-3호
의결 연월일	2008년 월 일 (제 223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8년 12월 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2. 8.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 4. 18.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호)

(1) 관계 법령 개정(2008.4.18.)으로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

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제한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제5호)

(1) 주거용 건물의 기준에서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

다.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 감액하는 비율을 확대(안 제36조)

- (1) 전년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경작용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일괄 변경

라.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 (안 제41조제3호)

-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

마.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 보완 (안 제35조제1항)

바. 기타 인용법률 및 직제개정으로 보완

- (안 제5조제1항제3호), (안 제6조제2항제2호), (안 제29조제2호), (안 제33조제2항), (안 제34조제1항제1호), (안 제34조제3항), (안 제41조제3호), (안 제47조).

사.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 (1)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외 2건(2008. 9.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등 변경)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나.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08.9.5.~2008.9.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
-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 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② 제1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

·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그 밖에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 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

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제1절(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산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건물과 부지의 대부분 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begin{array}{l}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
 \text{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 \\
 \text{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 \\
 \text{당 층의 총면적)}
 \end{array}
 \times
 \frac{
 \begin{array}{l}
 \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
 \text{사용하는 면적}
 \end{array}
 }{
 \begin{array}{l}
 \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 \\
 \text{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
 \text{(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
 \text{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
 \text{층의 총면적)}
 \end{array}
 }$$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0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장제2절(제40조부터 제4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매각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나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동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제4장 제3절(제4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신탁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시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7장(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한다.
3. "3급 관사"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

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3년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

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산업정보평생과장"으로, "교육정보화과장, 기획관리과장"을 "학교정책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관"을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평생교육체육과"를 "산업정보평생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 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본청</u>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p> <p>2. <u>제1관서</u> :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p> <p>3. <u>교육청</u>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본청</u>"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u>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u>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p> <p>2. "<u>제1관서</u>"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p> <p>3. "<u>교육청</u>"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4. <u>제2관서</u>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5. <u>관서의 장</u>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p>	<p>4. "<u>제2관서</u>"란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5. "<u>관서의 장</u>"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p>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당해</u>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u>당해</u>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u>당해</u>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③ 교육장은 <u>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p>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u>제2항 및 제3항의</u>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u>재산관리공무원을</u>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p>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해당</u>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u>해당</u>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u>해당</u>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③ 교육장은 <u>제2항에</u>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u>해당</u>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p>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u>제2항과 제3항에</u>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u>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u> 지정할</p>

현 행	개 정 안
<p>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같음할 수 있다.</p>	<p>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같음할 수 있다.</p>
<p>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u>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u>다음과 같다.</u></p>	<p>제4조(위임 사무) ① 교육감이 <u>제3조제2항에 따라</u>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u>당해</u>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u>관리</u> 및 사용·수익허가 나. <u>당해</u>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u>관리</u> 및 <u>대부</u> 다.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u>해당</u>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u>관리와</u> 사용·수익허가 나. <u>해당</u>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u>관리와</u> <u>대부</u> 다.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u>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u>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p>	<p>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u>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u>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p>
<p>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p>	<p>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p>

현행	개정안
<p>는 사무</p> <p>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p> <p>나. 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p> <p>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② 제1항 규정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u>학교운영지원과 세입관재담당사무관이</u>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p>는 사무</p> <p>가. <u>해당</u>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p> <p>나. <u>해당</u>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p> <p>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② 제1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u>재무과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u>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u>없는</u>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u>없을</u>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u>취득, 관리 및 처분</u>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④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u>취득·관리 및 처분</u>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1. 심의회는 위원으로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 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p>	<p>1. 심의회는 위원으로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p>
<p>2. 심의회는 위원장으로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p>	<p>2. 심의회는 위원장으로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p>
<p>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 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p>	<p>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p>
<p>4. <u>기타</u>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4. <u>그 밖에</u>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p>

현행	개정안
<p>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u>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u>건축법</u>」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p>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p>	<p>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4. <u>그 밖의</u>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u>건축법</u>」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p>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p>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현행	개정안
<p>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p> <p>5. 원상변경 여부</p> <p>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p> <p>7. <u>기타</u> 필요한 사항</p>	<p>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p> <p>5. 원상변경 여부</p> <p>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p> <p>7. <u>그 밖의</u> 필요한 사항</p>
<p>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u>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u>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u>각 호의</u>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u>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u>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p> <p>2. <u>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u> 재산</p> <p>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p> <p>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p> <p>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p>	<p>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p> <p>2. <u>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u> 재산</p> <p>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p> <p>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p> <p>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p>
<p>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p>	<p>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p>

현행	개정안
<p>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u>사용료 및</u>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p>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u>사용료와</u>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p>제 2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u>다음연도</u>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u>얻어</u>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u>얻어야</u> 한다.</p> <p>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u>의하지</u> 않는</p>	<p>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u>따른</u>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u>다음 연도</u>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u>받아</u>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u>받아야</u> 한다.</p> <p>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u>따르지</u> 않는</p>

현행	개정안
<p>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u>의하지</u>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u>의하여</u>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u>규칙이</u> 정하는 바에 따라 <u>총괄 재산관리관에게</u>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u>제7조의 규정에 따라</u>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u>제13조의 규정에 의한</u>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 재산인 <u>토지위에</u>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u>부속토지에 한한다.</u></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p>	<p>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u>따르지</u>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u>따</u>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u>제1항에 따라</u>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u>규칙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u>총괄재산관리관에게</u>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u>제7조에 따라</u>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u>제13조에 따른</u>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 재산인 <u>토지 위에</u>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u>부속토지로 한정한다.</u></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p>

현 행	개 정 안
<p>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 3 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p>	<p>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p>
<p>제19조(관리 및 처분) <u>재산관리책임 공무원</u>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9조(관리 및 처분) <u>재산관리공무원</u>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u>당해</u>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u>해당</u>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u>각 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	개정안
<p>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u>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u> 	<p>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u>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p> <p>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개인 또는 단체</u>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u>에 의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u>이조</u>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p> <p>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개인이나 단체</u>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u>이 조</u>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 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④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⑤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 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그 밖에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p>⑦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p>⑧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u>이조에서</u>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u>고의 또는 과실로</u>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u>변상 또는 원상복구</u>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p>⑦ <u>이미</u>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u>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p>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u>이 조에서</u> “허가 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u>고의나 과실로</u>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가 이를 <u>변상하거나 원상복구</u>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현행	개정안
<p>인한 <u>사고 또는 손해</u>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p> <p>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u>법 제27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u>제21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u>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u>규정</u>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p>	<p>인한 <u>사고나 손해</u>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p> <p>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 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u>법 제27조제1항</u>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u>제21조제1항</u>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u>제1항에 따라</u>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u>제14조</u>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에 따라</u> 행정·보존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법 <u>제27조제2항</u>에 따라 교육감이 필</p>

현행	개정안
<p>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p> <p>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효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p> <p>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효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잡종재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절 대 부</p> <p>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u>대부기간중의 사</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잡종재산</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대부</p> <p>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u>대부기간 중의</u></p>

현 행	개 정 안
<p>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u>환수 및 기타</u>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u>국가기관 또는</u>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u>당해</u>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p> <p>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1항제25호, <u>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u></p>	<p>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u>제35조에 따라</u>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u>환수와 그 밖의</u>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u>국가기관이나</u>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u>해당</u>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p> <p>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1항제25호, <u>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u></p>

현행	개정안
<p><u>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u>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u>은 조 제3항에 따른</u>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u>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u>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u>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u>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u>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u>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u>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u>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제38조의4제2항에 따라</u>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u>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의</u>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u>제2조제6호에 따른</u>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18조에 따라</u>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현 행	개 정 안
<p>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p> <p>6. <u>제1호 내지 제5호에</u>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u>제31조의 규정에 의한</u>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50 이상으로</u>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②다음 <u>각호의</u>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40 이상으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p>③ 다음 <u>각호의</u>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25 이상으로</u> 한다.</p>	<p>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p> <p>6. <u>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u>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u>제31조에 따른</u>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u>해당</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50 이상으로</u>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②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u>해당</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40 이상으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p>③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u>해당</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25 이상으로</u> 한다.</p>

현행	개정안
<p>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p> <p>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분인 경우</p> <p>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p> <p>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p> <p>5. <u>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u></p> <p>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u>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u></p>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분료의 효율은 <u>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u></p> <p>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p> <p>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p>	<p>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p> <p>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분인 경우</p> <p>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p> <p>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p> <p>5. <u>주거용으로 대부분하는 경우의 대부분료의 효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u>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u>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u></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분료의 효율은 <u>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u></p> <p>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p> <p>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4.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p> <p>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p> <p>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8.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p>	<p>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p> <p>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p> <p>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p>

현행	개정안
<p>가격의 1천분의 <u>50이상으로</u> 정할 수 있다.</p> <p>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u>대부요율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u> 한다.</p> <p>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u> 한다.</p> <p>② 제1항의 <u>원석시가라 함은</u> 생산지에서 <u>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u>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u>기타</u>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u>규정에</u>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u>생산비등을</u> 고</p>	<p>정가격의 1천분의 <u>50 이상으로</u> 정할 수 있다.</p> <p>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u>대부료의 요율 해당 폐교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u> 한다.</p> <p>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u>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u> 한다.</p> <p>② 제1항의 <u>원석시가라</u> 생산지에서 <u>해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u>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u>그 밖의</u>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u>생산비 등을</u> 고려하</p>

현행	개정안
<p>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p> <p>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p>	<p>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3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p> <p>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2. 지상 3층 이상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p>

현행	개정안
<p>부지평가액 전액</p> <p>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p> <p>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부지평가액 전액</p> <p>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p> <p>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u>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에 <u>대부료 또는 사용료</u>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u>각호와 같다</u>.</p> <p>1. 다음 <u>각목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u>재정경제부장관이</u>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p> <p>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u>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u> 사업</p> <p>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u>가목 내지 마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u>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u> 하는 경우에 <u>대부료나 사용료</u>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u>각 호와 같다</u>.</p> <p>1. 다음 <u>각 목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u>기획재정부장관이</u>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p> <p>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u>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u> 사업</p> <p>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p>

현 행	개 정 안
<p>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사. <u>가목 내지 마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u>200명 이상 300명</u>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사. <u>가목부터 마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u>200명 이상 300명</u>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u>의하여</u>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사. <u>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u>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u>제3조의2의</u>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u>따라</u>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사. <u>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u>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u>제3조의2에</u>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500</p> <p>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300</p> <p>③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p> <p>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p> <p>2. <u>기타</u> 공공기관 : 100분의 50</p>	<p>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p> <p>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0</p> <p>③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p> <p>2. <u>그 밖의</u> 공공기관: 100분의 50</p>
<p>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신설></p>	<p>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p>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p>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p> <p>4.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p>

현 행	개 정 안
<p>①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②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u>요청 또는</u>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③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②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u>요청이나</u>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④ <u>제3항에 따른</u>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u>제34조의</u> <u>규정에 의하여</u>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u>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u> 100분의 10이 <u>상</u>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지목 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u> <u>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u></p> <p>2. <u>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u> <u>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u></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u>제34조에</u> <u>따라</u>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u>사용료나 대부료보다</u>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u>100분의 70으로 한다.</u></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u></p> <p><u>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u></p>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u>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u>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u>1년 이하인</u>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p> <p>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p>	<p><u><삭 제></u></p>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u>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u>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u>1년 미만인</u>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p> <p>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p>

현 행	개 정 안
<p>황의 구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부계약 <u>년월일</u>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액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u>기타</u> 필요한 사항 	<p>황의 구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부계약 <u>연월일</u>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액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u>그 밖의</u> 필요한 사항
<p>제 2 절 매 각</p>	<p>제2절 매각</p>
<p>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u>각호의</u>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u>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u>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u>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p>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u>따라</u>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u>각 호의</u>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u>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u>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u>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

현 행	개 정 안
<p>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p>	<p>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나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p> <p>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p>

현 행	개 정 안
<p>명도일을 연장하는 때</p> <p>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p> <p>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잠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명도일을 연장하는 때</p> <p>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p> <p>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잠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삭제)</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u>2분의 1이상</u>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u>2분의 1이상</u>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u>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u>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p>	<p>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삭제></p> <p>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 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u>2분의 1 이상</u>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u>그 밖의 지역에서</u>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u>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u>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접</p>

현 행	개 정 안
<p>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u>한하여</u>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u>건축법</u>」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p> <p>5. 지방자치단체와 <u>당해</u>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신탁</p> <p>제42조(신탁의 종류) 영 <u>제48조제1항</u>의</p>	<p>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u>한정하여</u>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u>건축법</u>」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p> <p>4. 지방자치단체와 <u>해당</u>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신탁</p> <p>제42조(신탁의 종류) 영 <u>제48조제1항</u>에</p>

현행	개정안
<p>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공유임야 관리</p> <p>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u>한하여</u> 처분 하되 <u>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u>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공유임야 관리</p> <p>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u>한정하여</u> 처분 하되 <u>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u>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청사관리</p> <p>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u>위치·규모 재원확보</u>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u>의하여</u> 신축의 <u>타당성 여부</u>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p> <p>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청사관리</p> <p>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u>위치·규모 및 재원확보</u>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u>따라</u> 신축의 <u>타당성</u>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u>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p> <p>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p>

현행	개정안
<p>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u>감안하여</u>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u>의하되</u> 다음 <u>각호에</u>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u>증·감등</u> 장래수요를 <u>감안한</u>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u>충무시설 및</u>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p>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u>고려하여</u> 「건축법」 <u>제55조의</u>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u>따르되</u> 다음 <u>각 호에</u>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u>증·감 등</u> 장래 수요를 <u>고려한</u>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u>충무시설과</u>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관사관리</p> <p>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u>관사</u>"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u>기타</u>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관사관리</p> <p>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u>관사</u>"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u>그 밖에</u>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 	<p>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한다. 3. "3급 관사"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
<p>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p>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현행	개정안
<p>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p>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u>공작물 및 구축물</u>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u>공작물</u> 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

현 행	개 정 안
<p>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u>한함</u>)</p> <p>제56조(사용료의 면제) <u>제50조의 규정</u>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p>제57조(비품의 관리) 법 <u>제52조의 규정</u>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u>제55조의 규정</u>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p> <p>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u>제54조의 규정</u>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u>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u>운영비</u>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p>	<p>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u>한정함</u>)</p> <p>제56조(사용료의 면제) <u>제50조에 따른</u>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p>제57조(비품의 관리) 법 <u>제52조에 따른</u>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u>제55조에 따라</u>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p> <p>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u>제54조에 따라</u>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u>해당</u>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u>운영비</u>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p>

현 행	개 정 안
<p>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p>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p> <p>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p>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p> <p>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8 장 보 칩</p>	<p>제8장 보칙</p>
<p>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p>	<p>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p>

현행	개정안
<p>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분납 <p>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p>	<p>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이상: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3년 분납 <p>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 을 초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인을 <u>도용</u>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u>기타</u>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u>기타</u>재산을 	<p>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인을 <u>도용하거나</u>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u>그 밖에</u>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u>그 밖의</u> 재산

현 행	개 정 안
<p>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p> <p>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u>2인</u>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안 된다</u>.</p> <p>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u>토지 또는</u>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u>당해</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u>소유지분에</u>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당해</u> 토지의 <u>형상 및</u> 이용도를</p>	<p>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p> <p>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u>2명</u>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u>토지나</u>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u>해당</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u>소유지분에</u>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해당</u> 토지의 <u>형상과</u> 이용도를 고려하</p>

현 행	개 정 안
<p>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u>당해</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p>	<p>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u>해당</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u>따른</u>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p>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현 재					개 정 안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설별	기 준			비고	지역별	시설별	기 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사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사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운동장	일시사 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운동장	일시사 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군지역 (사지역 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군지역 (사지역 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재산관라관이 정하 여 장수할 수 있음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재산관라관이 정하 여 장수할 수 있음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개정 1989.4.10, 1990.6.30, 1996.6.15, 2000.7.27, 2007.12.28>

1.~3. 생략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5. 생략

□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기획재정부)

제7조(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매각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로서 재산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②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가 제1항제1호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한다)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 제1항제1호의 영세규모에 해당되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
"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
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8.3.21.>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
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10.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
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
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12. 19. 14:00)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2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8년 12월 15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12월 15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12월 1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 2009학년도 유치원·초·중학교 신설,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 명칭 변경, 초·중 통합 운영과 지번 변경으로 인한 주소 변경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폐지와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09학년도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및 중학교 3개교 신설

- 단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 원 년월일	설립사유
산남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75번지	2009.3.1.	공교육 기반 조성

-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 원 년월일	설립사유
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2009.3.1.	공교육 기반 조성

-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개 교 년월일	설립사유
직지 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2009.3.1.	대농1지구 유입학생수용

- 중학교

명 칭	위 치	개 교 년월일	설립사유
서현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006번지	2009.3.1.	강서1지구 유입학생 수용
용성중학교	충청북도 상당구 용정동 388-1번지	2009.3.1.	용정지구 유입학생 수용
오송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 65BL	2009.3.1.	오송생명과학단지 유입학생수용

○ 전문계 고등학교 교명 변경

변경전 명칭	변경후 명칭	위 치	변 경 연월일	변 경 사 유
진천농공 고등학교	진천생명과학 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2009.3.1.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 학교 주소 변경

- 병설유치원

명 칭	구 분	위 치	변 경 사 유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세자구 70B	지번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917번지	
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31번지에서 31-5번지로 분할
	변경후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5번지	
이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485번지에서 485-1번지로 분할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1번지	
부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224번지와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4번지	
매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53-1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3-1번지	
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524-1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4-1번지	
초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지번 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1-1번지	
가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초·중 통합운영
	변경후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번지	

- 초등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 경 사 유
서현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세자구 70B	지번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917번지	
충주금릉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31번지에서 31-5번지로 분할
	변경후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5번지	
이수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485번지에서 485-1번지로 분할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1번지	
부용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224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4번지	
매곡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4번지	53-1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53-1번지	
심천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524-1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4-1번지	
초강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지번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1-1번지	
가곡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초·중 통합운영
	변경후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35번지	

- 중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 경 사 유
영동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번지	78번지로 합병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8번지	
상촌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번지	467번지에서 467-3번지로 분할
	변경후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467-3번지	

- 고등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 경 사 유
서원고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79번지	구획정리확정 으로 인한 지번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80번지	

○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분교장병설유치원 3개교 폐지

-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폐 지 년월일	폐지사유
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73번지	2009.3.1.	단설유치원 신설
셋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005번지	2009.3.1.	단설유치원 신설

명 칭	위 치	폐 지 년월일	폐지사유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2009.3.1.	엄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
청성초등학교 능월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2009.3.1.	청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2009.3.1.	칠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

- 초등학교분교장

명 칭	위 치	폐 지 년월일	폐지사유
엄정초등학교 목계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2009.3.1.	엄정초등학교로 통합
청성초등학교 능월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2009.3.1.	청성초등학교로 통합
칠성초등학교 외사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2009.3.1.	칠성초등학교로 통합
영춘초등학교 의풍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2009.3.1.	영춘초등학교로 통합

- 중학교분교장

명 칭	위 치	폐 지 년월일	폐지사유
충주중앙중학교 가금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361-7번지	2009.3.1.	충주중앙중학교로 통합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산남유치원

- 기존 산남초병설유치원과 셋별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함으로써 부족한 유아교육 시설 확충함은 물론 유아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 공립유치원 취원 기회 제공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직지초병설유치원은 직지초가 2009. 3. 1.자로 개교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추진을 통한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원하는 것임

○ 직지초등학교(直指初等學校)

- 직지초등학교는 2006년도 BTL 대상사업으로 200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청주 대농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 서현중학교(西賢中學校)

- 서현중학교는 2006년도 BTL 대상사업으로 200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청주 강서지구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 용성중학교(龍城中學校)

- 용성중학교는 당초 2006.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요예산 미 교부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출산을 저하에 따른 저출산 수용대책과 용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개교 시기를 2009년 3월로 연기하여 청주 용정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 오송중학교(五松中)

- 오송중학교는 당초 2008.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문화재 발굴 추진 등으로 기반 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2006. 7월로 변경되어 단지내 주택공사 착공 및 입주 시기 지연으로 개교 시기를 2009년 3월로 연기하여 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 진천농공고등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원예과 관련 특성화 영역을 학교 명칭에 반영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명을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학교 주소 변경은 택지개발지구내 지번이 확정되고,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그리고 초·중 통합 학교 운영으로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셋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인근에 단설유치원인 산남유치원이 2009. 3월 개원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기타 나머지 병설유치원은 분교장의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하는 것임
- 엄정초등학교목계분교장(12명, 3학급), 청성초등학교능월분교장(10명, 3학급), 칠성초등학교외사분교장(12명 3학급), 영춘초등학교의풍분교장(4명, 2학급), 충주중앙중학교가금분교장(10명, 2학급)의 경우 농촌의 이농현상과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학생이 있는 또래 집단 속에서 폭넓은 인격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성 신장 및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본교로 통합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2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8년 12월 15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12월 15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8년 12월 18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 심의 사항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유재산으로 확정함.

- 주거용 건물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제한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제5호)
 - 주거용 건물의 기준에서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함.
-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 감액하는 비율을 확대(안 제36조)
 - 전년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경작용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일괄 변경함.
-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안 제41조제3호)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함.
-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35조제1항)
- 기타 인용법률 보완·수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보완(안 제29조제2항)
 - 「건축법」 제55조의 건물의 견폐율 인용(안 제47조)
 -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대지의 분할 제한 인용(안 제6조제2항제2호 / 안 제41조제3호)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안 제34조제3항)
- 조직개편(2008. 9. 1.)에 따라 부서 명칭 변경 및 재산업무담당사무관 지정(안 제5조제1항제3호)
-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외 2건(2008. 9.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등 변경)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 심의 사항 삭제
 - 종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50% 이상 진척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된 후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사 중인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되는 복식부기의 회계제도가 2007회계연도부터 도입되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공사 중인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행정재산으로서 확정 사항을 삭제하는 것임
- 안 제30조제3항제5호에서 주거용 건물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제한규정 삭제
 - 대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주거용 건물 중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에 비해 높은 요율을 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요율을 1천분의 50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하는 것임

- 안 제36조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 감액하는 비율을 확대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감액 범위가 종전 5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경작용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까지 구분하여 규정한 것을 용도별 구분을 없애고 100분의 70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일원화 하는 것임

- 안 제41조제3호에서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함

-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3호가 2005. 6. 30. 개정되어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토지에 대한 소유시점이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변경되었으며,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 부칙 제6조와 동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고, 아울러 보상을 함에 있어서도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에 수의계약

매각 대상 토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 소유 시점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35조제1항을 신설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재산의 범위를 정함
 -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마련함
- 인용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2. 29.), 「건축법」(2008. 3. 21. 전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보완하고, 안 제47조에서는 「건축법」상의 건물의 건폐율 인용 조항인 제55조를 삽입하고, 인용 법률명이 다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인용 법률명을 변경함
- 정부조직 개편 및 도교육청 조직개편(2008. 9. 1.)에 따라 정부 조직 및 도교육청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에 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라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다른 조례상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음.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08. 4. 18.)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체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법령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대부료(사용료) 감액을 변동에 따른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 부칙 제1조에 단서조항인 “다만, 제36조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5.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중 대부료(사용료) 감액을 변동에 따른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 골자

- 부칙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제36조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8. 12. 19.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중 대부료(사용료) 감액을 변동에 따른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사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칙 제1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제36조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3.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조항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다만, 제36조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8.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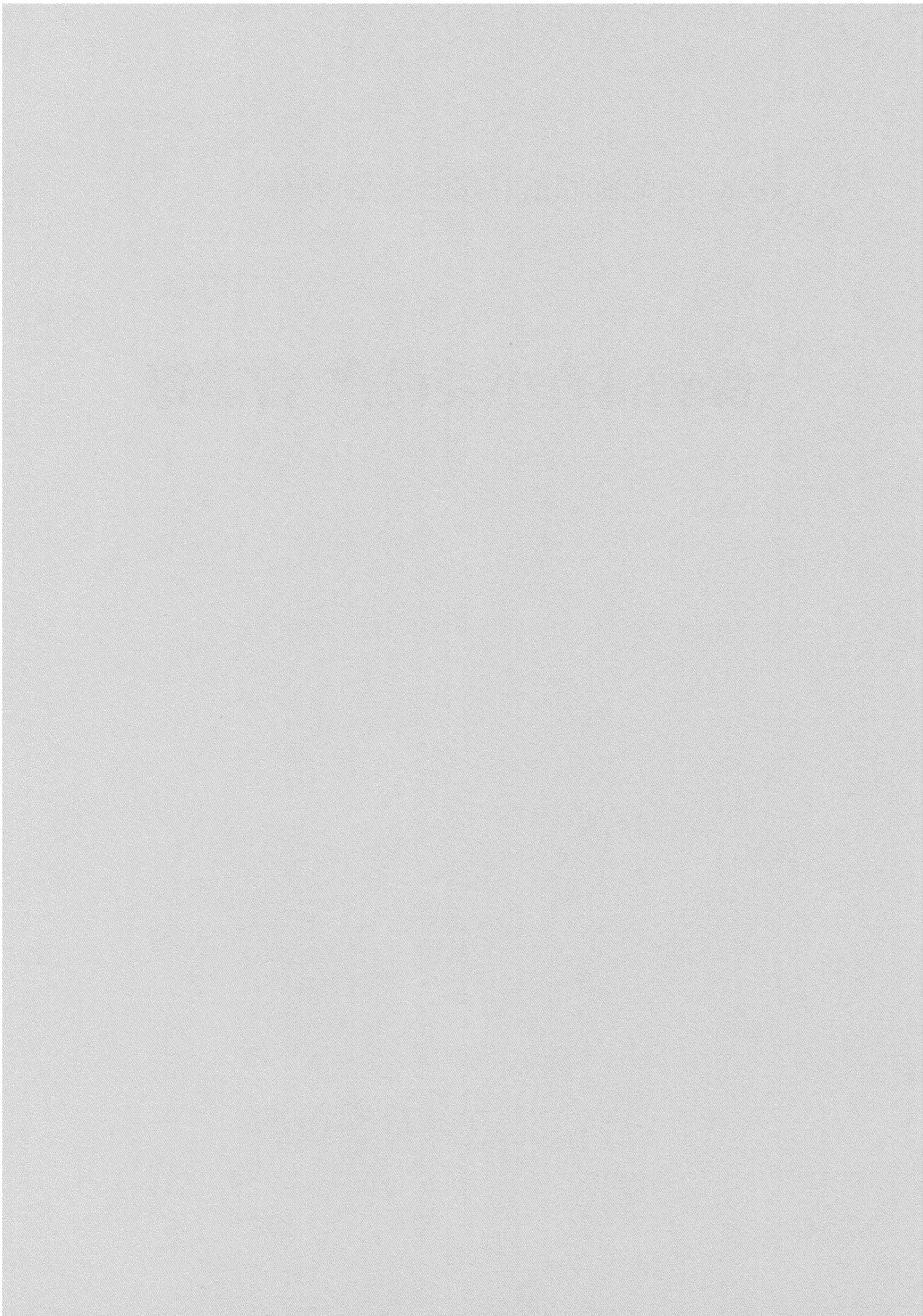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成永龍
간사	김병우 김병우
위원	김부응 김부응
	서수응 서수응
	이상일 이상일
	정무 정무

第22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309
II.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313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327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14시 20분

議事日程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審查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20분 개의)

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용 위원

교육위원 서수용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영용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이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숙의하여 조례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4시 22분)

● 위원장 성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교육위원 이상일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김병우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김병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우 위원님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우

중요한 조례를 심사하는데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좌해서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4시 23분)

●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과 12월 18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
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
일 11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립
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제223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김병우,

위 원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재무과장 박노화.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8년 12월 18일 (목요일) 10시 58분

議事日程 (제223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審查된 案件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개의) 니다.

● 위원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우

제가 살펴보니깐 별다른 건 없는데요.

신설학교 관련해서 우선 교명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설립인가를 할 때하고 달라진 교명이 있죠.

●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행정예산과장 김영구입니다.

달라진 교명이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 중에 직지초등학교가 원래가 뭐였었죠.

●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서청초등학교였었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랬다가 직지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게 된 경과랄지 이런 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행정예산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이 교명을 선정하게 되는 과정은 우리 설립계획에는 가칭 학교명칭을 사용하다가 개교시점 임박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해서 교명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는 2개안이 추천이 됐어요 교육청으로 공모를 해서, 가칭 명칭은 서청초등학교였었는데 제1안으로 추천된 거는 직지초등학교하고 세은초등학교 2개교가 공모해서 청주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복수안으로.

그래 저희들 도교육청 각 과별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많은 득표를 했다고 할까요 지지하는 학교명을 선정을 해서 직지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직지초등학교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 심의과정은 의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냥 구성원들의 희망이나 선호도만 이렇게 가지고 많은 쪽으로 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걸 따져봐야 될텐데, 그렇죠.

●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 중에 지난번에도 전국의 유사 교명

이나 또는 동일 교명이 있을 때 옛날 같으면 원거리에 같은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별 혼동이 없었겠지만, 요즘 같으면 인터넷 검색할 때 자칫 혼선이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지역명을 붙이거나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번에도 고려를 해 보셨나요?

●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행정예산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같은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지명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타도에 직지초등학교가 경북 김천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있는 동일 명칭이 있는 학교의 경우는 굳이 지명을 붙이지 않고 학교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 간사 김병우

저는 중·고등학교를 그쪽에서 다녔기 때문에 직지사 밑에 직지초등학교 있는 것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지가 우리 고장의 자랑이 되면서 정말 우리 고장에 그 이름을 딴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우리 고장에 직지초등학교를 설립을 하는 것은 또 교명을 붙이는 것을 지지하고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어디가 원조냐 이런 것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편의상 이후에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현초등학교를 교명을 확정을 지을 때 아마 이 부분을 관리국장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고, 그때 그런 취지를 집행청의 고민을 저도 동의를 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도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논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 부분에 도내의 동일 교명 아닌 경우에는 지역명을 굳이 붙이지 않는 것을 선행으로 관례로 이렇게 확인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도내 타 시·도에 있는 건 염두에 안두고 도내에 있는 것은 도내에서 단일 학교는 지명을 붙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리고 또 하나 용성중학교 어제 가봤더니 학교는 진척이 공사진척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인근에 조성되기로 되어 있던 모 아파트단지가 부도로 신축이 늦어지면서 입주도 지연이 되게 되고 그래서 학생수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주변 기반시설들이 지어지지 않아서 개교 이후에 불편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위원님들 사이에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청으로서 어떤 걱정이나 또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성중 학교가 지금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다소 업무를 계약한 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사가 주변시설 공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고, 또 주변의 환경이 저희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를 개교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입로 쪽이라든가 또 도로 쪽에 부분이 완전히 지금 계획대로 공정이 되지 않고, 개교이후에도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환경이 저해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심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을 연기를

할 것인가도 검토를 했고 그냥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청주시교육장님을 포함해서 회의도 가졌던 결과, 이게 BTL사업이다 보니까 학생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임대료만 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또 그것이 주변시설이 열악한 것이 학교 본 공사에는 다소의 어려운 점만 조금 보완하면 학생들이 불편은 없겠다, 그래서 이것이 외부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를 연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개교를 하고, 다만 진입로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수처리라든가 또 상수도 이런 부분은 외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 그 부분까지 하기는 너무 재원이 목적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된 범위 내에서 내용을 다소 변경을 시켜 가지고 우선 주변여건이 완성되기 전까지 쓸 수 있도록 간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응급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진입을 하거나 또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또 가장 염려되는 것은 학교 정문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미지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주시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다른 것이 안되더라도 기반시설은 진입로 쪽까지는 우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들여서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주위의 아파트가 늦어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학생수가 840명을 제대로 못 채운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은 일단 840명을 수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교직원도 다 배치는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사수급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 대안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혹시 모자를 경우, 지금 모자라는 건 불보듯이 원하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중학군은 저희들이 학구제로 하기 때문에 단일 학구로 하게 되면 위원장님 지금 걱정하시듯이 아파트가 진척이 되어서 입주민이 적어지는데, 이건 초등학교하고 달라서 중학구군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아파트가 입주가 안됐을

경우 근거리 학생들이 오는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체 청주시의 단일 학군이 아니고 몇 개 학군이 있는데 그 용성중학교 학군 내에서의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수용계획하고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입주민들은 근거리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지어놓은 건데 그 학교를, 조금 원거리 학생들이 오는 불편은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그거는 아파트가 완성되어서 입주민이 되기까지는 다소 그런 불편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위원장 성영웅**

어려움에 대한 최대한 배려나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저는 조례안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네 군데 학교를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거기서 느낀 점이 청원의 오성중학교 거기는 조경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네요. 조경사업이 공사계약할 때에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는 건지, 어떻게 들어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경사업은 본 계약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 김부웅 위원

청주시의 3개 학교는 아주 엉성하기 그
지없어요. 이걸 조경사업이 아니라 서수
웅 위원님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도 지
적하시는 것이 이걸 조경사업이 아니라
밖으로다 해집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청원군은 가서 보니까 교육장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이걸 내 눈
에 벗어나면 절대 안된다고 말이야 그래
서 그런지 거기는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청주시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
나도 없어요. 그냥 글썽 잣나무 요만한
것 몇 개 심어놓고 말았어요. 이거 꼭 한
번 따져보실 일 같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조경사업
특히 청주시의 BTL사업들이 식재 요 부분
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
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보강을 시키겠고요.
또 이미 다되어 있는데 시설 공정상 아직
나무를 식재를 하지 않았다면 그걸 별도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기 그래서 어제 청주과장한테 일부로
전화를 걸어서 오송중학교 가서 보고 배
워라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웅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일 위원

제가 궁금해서 조례안하고 조금 거리가
멀는지도 모르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신축한 학교의 증축
의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에 실례를 들면
충주의 국원초가 BTL로 해서 개교한 지가
얼마 안돼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짓다보니까 헌 아파트에 사는 사람
들이 다 그리로 몰려 와 가지고 기존의
예성초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17개씩 남
고 다른 주위의 학교들이 많이 교실이 남
는데, 여기는 교실을 더 지어서 학급을
늘려달라고 학부모들이 저한테도 건의를
하고 교육장한테도 건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BTL로 학교 전체를 설립했
을 경우에는 관리를 회사에서 하죠, 우리
가 안하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붙여서 교실을

네 다섯 칸을 증축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BTL사업을 일단 해서 업자가 다 건축을 완료한 후에 기부채납을 하면 일단 소유권은 교육감님한테로 소유가 넘어오고, 다만 그거에 대한 임대료와 이자를 20년 동안 원금상환과 함께 이자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권을 건물의 운영은 회사에서 하고 거기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 수요가 학생들이 증감이 있어서 부득이 건축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는 BTL회사에 추가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짓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도 동일한 건축에다 지었을 경우에 하자발생이라든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짓기로 말하면 별도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도 BTL사업 학교계약에 따라서 계약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있으면 교실은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BTL 쪽으로 한번 협상을 해보고요,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고, 다만 운영은 건물운영은 교장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BTL회사에서 하느냐 그 부분은 재원이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BTL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리로 넘어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 재원으로 했을 경우에 BTL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장이 단독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방법은 슬기롭게 우리가 신중적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학생이 많으면 몇 명씩 더 학급에 증원을 해서 넣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번에 새로 지어진 BTL사업으로 한 교실이 기존에 우리가 짓는 교실보다 작아요. 그래서 35명 이상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것하고, 이게 참 힘든 얘기인데 그 주위에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7개, 8개 내지 15개 이상의 교실이 남는 데가 있는데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는 이유로 전부 그리로 가는데, 과거 같으면 이게

학구제로 해서 조정을 하면 충분히 더 안 짓고도 될 건데, 그런데 제 생각에 충주처럼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데는 불과 몇 년 후에는 새로 증축한 교실 또 남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몇 년만 슬기롭게 조절하면 좋겠는데, 요 근래 학부모들이 하도 극성스러워서 왜 길 건너 가까운 학교 나누고 먼 데까지 가라고 하느냐, 먼 데라야 1km 미만 학교인데, 그래 그런 것도 한번도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고 거기 짓고 저쪽 남는 거는 텅텅 비어있고, 사실 국가 재산관리로 보면 큰 낭비란 말이에요. 지금 비어있는 학교 충주예성초등학교는 열 몇 개 교실이 남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큰 걱정이랍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교실은 금방 폐허가 되고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니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니까 주거용 건물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거기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요율로 적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요율을 1,000분의 50이상에서 1,000분의 25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성영웅

정무 위원님, 그건 안건상정이 안되고 요거 끝난 뒤에 다시 할거니까 그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무 위원

제가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침에 집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삼양유치원의 자모님인데 단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삼양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유치원생 아이들이 다니기는 법니다. 그래 급식소를 별도로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미리미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충주남산도 아마 그런 게 있죠 거기도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급식소하고 거리가 이렇게 먼 이런 데를 미리미리 조사해서 가지고 미리 그 민원이 생기기 전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자모님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얘기해도 답변이 시원찮고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한테 얘기해도 답변이 미지근하고 도에 가서 교육감을 찾아온다고 그러기에 교육감님한테 와서 되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거 알았으니까 저는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왔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성영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

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 위원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무 위원

제가 말씀하다가 끊었는데, 주거용 건물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시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조제3항제5호 현재 주거용 건물중 무허가 건물의 대부료나 사용료에 대하여는 준공을 피한 건물에 비해 높은 요율로 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요율로 적용하고 있는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요율을 1,000분의 50이상에서 1,000분의 25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무허가 즉 불법과 똑같이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불법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노화

재무과장 박노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무허가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무허가 이게 불법인데 뭔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위의 법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그렇게 간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 재무과장 박노화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또 근거도 되겠습니다. 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만약에 그런 건물이 있다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무 위원

뭔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으면서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건 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우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근거령에 시행령에 보면 사용료나 대부료 조정을 한 뒤에 그 적용은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조례를 만들 때 요 조례안에 기존의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과 조치를 언급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재무과장 박노화

재무과장 박노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요. 명시를 하지도 않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명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조례부칙으로 그 내용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조정이 필요하면 정회를 해 가지고 조문을 다듬을까요? 우선 안이 있으면.

● 재무과장 박노화

안을 제시해 주시면.

● 위원장 성영용

요거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하시는 겁니까?

● 간사 김병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그럼 수정동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를 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우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부료(사용료) 감액을 변동에 따른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에 다만 제36조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우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제223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웅, 간사 김병우,

위 원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행정예산과장 김영구, 재무과장 박노화.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8. 12. .

위원장 성 영 용 成永龍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2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8. 12. 15. (월) 본회의 종료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8. 12. 18. (목)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